

관계사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 시 고려 사항

Q 관계사 (Veoneer China) 직원 (중국인) 에게 compensation 명목으로 상품권 2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할 때, 원천세 등 tax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정은 접대비로 처리 할 예정입니다.

A 접대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만 있으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접대비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타처 보관시 고려 사항

Q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에 있는 관계회사(판매 법인)에 판매용 기계를 보관하고, 현지에서 기계가 판매될 때 매출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판매용 기계가 현지에 있다 하더라도 고객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간 보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해외 타처 보관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판매시에 인식하면 되는지요?
2. 해외 타처 보관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보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을런지요?

A 1. 국내에서 제작 또는 구입한 기계를 해외에 보관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라도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적용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입하여 보관한다고 판매시는 판매시점에 매출인식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반영하면 됩니다.

2. 해외 보관에 대한 법적제한이나 기간등은 세법에는 특별한 제한이나 규정은 없으나, 타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직원 출장 시 경비(숙박비, 소액경비, 교통비)에 대한 비용인정 문의

Q 회사에서는 직원이 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와 소액경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비는 영수증을 첨부한 실비정산(한도있음), 소액경비와 교통비는 정액으로 지급(영수증 미첨부)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직원의 출장비 등과 관련된 경비 지급시에는 사회통념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급하되 증빙을 징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부통제 등의 이유 등으로 증빙없이 통념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 출장과 관련된 비용을 직원에게 지급 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해도 상관이 없나요?(사회통념상에서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Q.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경비(숙박비, 소액경비,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통념상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Q. 직원의 출장명목의 비용집행 시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경비를 지급할 경우 증빙불비 등의 가산세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나요?

A

1. 회사내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비과세)로 인정됩니다.
2. 사회통념상 범위는 구체적 기준이 없으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실비변상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증빙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형 라이선스에 대한 감가상각 질의

Q

자사는 현재 개발을 위하여 무형의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 3년이상 사용 - 500만원 이상 -소유권은 공급자한테 있음

- 처음 구입 하고 기간에 따라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 비용이 기간 마다 발생 하지만 이를 지불하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EX: 구입비 : 2천만원 , 유지보수 비 2년에 300만원)

위의 경우에 무형의 라이선스에 대하여 처음 구입비는 자산을 잡고 감가상각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모두 기간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소유권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용 기간과 금액이 클 경우 상각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A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데, 통상 소유권이 없으면 귀사가 통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